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군위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 위 군 수

2026. 8. 7.

2026년도 군위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2차 공고

1. 신청자격

군위군에 소재하고,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3년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군위군 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2. 공모사업 : 265,000천원(2건)

3. 공모사업 세부내역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50회 군위군민체육대회 읍면 참가외 1건(내역 별첨) • 사업기간 : 2026. 9. ~ 2026. 12. • 사업내용 : 자발적인 체육활동으로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		

- 소요예산 : 265,000천원 정도(보조금 외에는 자부담)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7.(금) ~ 2026. 8. 21.(금)
- 접 수 처 : 군위군청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380-6097,6917)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등

5. 심사 및 결과통보

- 군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격성,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단체별로 통보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정산

-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결과 성과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 시 정산보고서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 제출

7.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조치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회원수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업 내용	분야						
	신청사업명						
	기간				장소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자부담액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 (직인)

군위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 2. 단체소개서
- 3. 주요사업 실적(각종 자료, 사진 등 첨부)
- 4.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

[붙임 1-1]

[사업계획서]

□ 사업명 :

	<목 적>		

○ 주요내용

.

.

- .
- .
- .
- .

※ 사업내용을 개조식으로 세부사항까지 기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사업기대효과

- .
- .
- .
- .

※ 사업성과 및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보조금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적 요 (사업및품명)	사 업 비 내 역				산 출 기 초
	계	보조금 신청금액	자체 부담	기 타	
계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제시

[붙임 1-2]

[단체소개서]

단 체 명 (대표자)	
연 락 처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지원근거 개별법령	• ○○○○법 제○조 ※법령내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단체구성 현 황	• 대표자(회장)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2025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보조금(%), 사업수익(%), 기타(%)
2025년도 주요사업 실 적	• ※ 각종 자료, 사진 등 별지 첨부 • • • •
2026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단체의 정관(회칙) 첨부